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62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백혜련 · 이수진 · 장종태
홍기원 · 박용갑 · 박지원
안태준 · 황정아 · 정춘생
전진숙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톱킹행위의 대상자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으로 하여금 스톱킹행위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스톱킹행위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뿐 아니라 상대방의 직장 동료, 현재 연인 등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발생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톱킹범죄나 상습적인 스톱킹범죄는 보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스톱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등이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스톱킹행위자는 수강명령 등의 병과 대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스톱킹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스토킹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및 상습적인 스토킹범죄의 형량을 상향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스토킹범죄자와 긴급응급조치 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수강명령 등이 의무적으로 병과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스토킹행위의 대상을 상대방의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확대함(안 제2조제1호).
- 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하여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 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기간 연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 마.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긴급응급조치 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가족”을 “가족, 그 밖에 상대방과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우편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으로 한다.

제7조제6항제2호가목·나목 및 다목 중 “가족”을 각각 “가족,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가족”을 “가족,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가족,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우편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가족”을 “가족,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을 “가족,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 법정대리인”으로, “동거인, 가족이”를 “동거인, 가족,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로 한다.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기간 연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2.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 및 제20조제2항·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병과할 수 있다”를 “병과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u>가족</u>(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p> <p style="padding-left: 2em;">나. ~ 사. (생략)</p> <p>2. ~ 4. (생략)</p> <p>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톱킹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톱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톱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p>	<p>제2조(정의) ----- -----.</p> <p>1. ----- ----- ----- ----- -----.</p> <p>가. ----- --<u>가족, 그 밖에 상대방과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u>----- ----- -----</p> <p>나. ~ 사. (현행과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 ----- ----- ----- -----</p>

토키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키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키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스토키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생략)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 ① ~ ⑤ (생략)
- ⑥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생략)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스토키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
---우편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

1. (현행과 같음)

2. -----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
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
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
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
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의 결정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
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
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
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
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
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
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의 결정

가. -----

----가족, 그 밖에 피해자
와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나. -----

-----가족, 그 밖
에 피해자와 가족에 준하
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
람-----

다. -----

----가족, 그 밖에 피해자
와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 4. (생략)
 ② ~ ④ (생략)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족,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3. -----
가족,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우편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

- 3의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 ⑦ (생략)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 ② (생략)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② (생략)

<신설>

-----가족,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가족,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 법정대리인-----

-----동거인, 가족,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기간 연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 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

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⑦ -----제6항-----

1. ~ 3. (현행과 같음)

⑧ -----제6항-----

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생략)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2.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2. (생략)

② ~ ⑥ (생략)

-----사람 및 제20조제2항·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